

만드는 복지				
	평	AH	大	
		0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다 료	
배 포 일	2020. 8. 30. / (총 1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은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당자 한연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성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당자 박현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광찬	그 등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당자 이은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김용재		043-719-2051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조성훈		043-719-2054	
보건복지부 상황관리총괄1팀	과 장 김 국 일 팀 장 유 정 민 담 당 자 김 민 주		044-202-2420 044-202-2419 044-202-24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후속조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후속조치, ▲의사 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점검·단속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 급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에 대한 폭행 사 례를 언급하면서,
 -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 미준수 및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 릴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이번 한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주고 계신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이번 한 주를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8월 16일(일)부터 8월 2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99.7명으로 이전 2주간(8.2.~8.15.)의 35.0명에 비해 264.7명 증가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9.4%**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 직장과 소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39.1명으로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2일 ~ 8월 1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0명	
수도권	30.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5.2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23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10.2% (72/70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월 16일 ~ 8월 29일				
	299.7명				
	239.1명				
	11.8명				
ľ	40건				
	19.4% (848/4361)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Rightarrow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1.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8.2.~8.15.)에 비해 3.4명이 감소하였다.
- 특히, 지난 1주간(8.23~8.29)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331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4.9%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늘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다"라며
 -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의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 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춰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고자 8월 31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평 생 친 구

- 서울시는 정류소 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주말을 맞아 교회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 여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전단지 배포,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8월 30일(일)부터는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및 시민들의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22개반 88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34개반 114명으로 확대하고, 격리자·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심리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화)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기숙학원 22개소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대형학원 171개소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한 결과,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고발하였다.
 - 8월 30일(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실시할 계획이다.





평생친구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음식점·카페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7만 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 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하였다.
- 오늘(8.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업체(본사)와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카드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 또한,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4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상황

-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웅 상황**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와 범의료계가 전공의 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최근 경과 >

- ◇ **정부-의사협회 합의문(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합의 무산**(8.25)
- * 합의문(안 :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시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협의 중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않기로 하는 내용
- ◇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전공의협의회와 면담(8.28),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추진중단 등 입장 밝힘
- ◇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범의료계는 합의사항 이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역량을 기울여줄 것 촉구(8.29)
- ◇ 전공의협의회 1차 투표결과 파업유지 부결, 최종 파업 결정(8.30, 12:00)
- □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되어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생친구

- 1차(8월26일~8월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28일~8월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하여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 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8월 31일(월)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평 생 친 구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59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1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2496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19명이 감소하였다.
 - 접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도 8월 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담공무원 수도 7만2649명으로 8월 초에 비해 4천 1백여 명 증가하였다.
 - * 자가격리자 수 : (8.1일) 3만219명 → (8.29일) 6만1599명
- **어제**(8.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0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2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홍시설 5,586개소, ▲교 회 1,233개소, ▲학원 963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6651개소를 점 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5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반, 1,094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행동 지침
 -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 –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 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이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 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다중 이용 민간 시설	고행사이즈형 커피전문점 고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 피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장 공연장 영화만 목욕탕시우나, 멀티방DMD방, 장례식장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피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O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공공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	 무인원 제한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평생친구

붙임2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ON











평생친구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주,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간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 - 15 -





